

위탁 및 이동 청소년 교육 정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 또는 "Charter School") 위원회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가족 상황, 교육 프로그램 중단, 정서적, 사회적 문제 및 기타 건강상의 필요로 인해 학업상의 성공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장벽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주립 및 Charter School의 학업 표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제공하고, 법률에서 요구하고 Charter School의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LCAP")에서 위탁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전략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의

위탁 청소년

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WIC") 309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의 대상인 아동(아동이 소년 법원에 의해 아동의 집에서 퇴출되었는지의 여부).
2. WIC 602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의 대상인 아동이 소년 법원에 의해 아동의 집에서 퇴출되어 위탁 보호 중임.
3.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WIC 450항에 설명된 대로 소년 법원의 과도기 관할하에 있는 비미성년자:
 - a. 해당 비미성년자는 소년 법원의 위탁 양육 배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만 18세가 됨.
 - b. 해당 비미성년자는 카운티 복지 부서, 카운티 보호 관찰 부서, 인디언 부족, 부족 공동체 또는 부족 조직의 배치 및 보호 책임하에 위탁 양육 중임.
 - c. 해당 비미성년자는 과도기적 독립 생활 사례 계획에 참여 중임.
4. 부족 법원에 제출된 청원의 대상인 인디언 부족, 부족 공동체 또는 부족 조직 법원의 부양 아동.¹
5. WIC 11400항에 정의된 바에 따른, 자발적 배치 협약의 대상인 아동.

전 소년법정학교 학생

이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소년법정학교에서 Charter School로 편입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군인 가정 자녀

이는 현역 군인의 세대에 거주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주 아동

이는 지난 12개월 이내에 해당 아동 또는 아동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농업이나 어업 활동에서 임시 또는 계절 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부모, 보호자 또는 양육권을 가진 다른 사람과 함께 캘리포니아 내에서 또는 그 외 다른 주의 지역 교육 기관("LEA")에서 Charter School로 이동한 아동을 말합니다. 해당 아동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의 이주 교육 서비스 적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학부모/보호자 없이 농업이나 어업 활동에서 임시 또는 계절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계속 이주해 온 아동이 포함됩니다.

¹ Charter School에서는 어떤 학생이 인디언 부족, 부족 공동체 또는 부족 조직의 부양 아동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법원 대표자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이는 영어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는 새로이 도착한 이민자 학생들의 학업 및 과도기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교육 권리 보유자(ERH)

이는 WIC 319, 361 또는 726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교육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에서 임명한 부모, 보호자, 책임 있는 성인 또는 교육법 56055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위한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출신 학교

이는 위탁 청소년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때 다녔던 학교 또는 위탁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영구적으로 거주할 때 위탁 청소년이 다녔던 학교가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와 다르거나, 위탁 청소년이 직전의 15개월 이내에 다녔던 다른 학교가 있을 경우, 위탁 청소년을 위한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 위탁 청소년 및 해당 청소년을 위한 ERH와의 협의 및 동의하에 해당 위탁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출신 학교로 간주될 학교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선의 이익

이는 위탁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학교 배치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제한이 적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받을 기회와 위탁 청소년이 모든 Charter School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업 자원, 서비스, 과외 및 심화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에서 위탁 청소년/소년법정학교 학생, 전 소년법정학교 학생, 군인 가정 자녀, 현재 이주 아동 및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위탁 및 이동 청소년"으로 통칭합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의 등록, 배치 및 Charter School로의 전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다음 직책을 위탁 및 이동 청소년에 대한 Charter School의 연락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Marni Parsons, VP of Student and Family Services(학생 및 가족 서비스 교감)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mparsons@brightstarschools.org

323-954-9957 x1004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1. 적절한 교육 배치, Charter School 등록 및 위탁 청소년의 Charter School 체크아웃을 보장하고 용이하도록 지원함.
2. 위탁 청소년이 Charter School로 또는 Charter School에서 전학할 때 학점, 기록 및 성적의 적절한 양도를 보장함.
3. 위탁 청소년이 Charter School에 등록할 시,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는 모든 학업 및 기타 기록을 얻기 위해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에 학생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에 연락해야 합니다. 위탁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는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에 미납된 비용, 벌금, 교과서 또는 기타 물품이나 돈에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새

학교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탁 청소년이 새 학교로 전학할 시,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는 Charter School에 미납된 일체의 미해결 비용, 벌금, 교과서, 또는 기타 물품이나 돈에 관계없이 새 학교의 요청을 수신한 후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새 학교로 해당 학생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법에서 요구할 경우, 다음 날짜로부터 달력일 기준 최소 10일 이전에 위탁 청소년의 변호사와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의 해당 담당자에게 통지합니다.
 - a. Charter School 현장에 따른 재량적 행위에 대한 퇴학 청문회.
 - b. 퇴학을 권고하는 결정이 Charter School 현장에 따른 재량적인 행위일 경우, 퇴학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학을 연장하는 일체의 회의. 위탁 청소년의 변호사와 대리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 c. 배치 변경이, 퇴학 권고가 재량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며 해당 학생이 주 및 연방 특수 교육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생일 경우 위탁 청소년의 배치 변경 이전의 표명 결정 회의. 위탁 청소년의 변호사와 대리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5. 필요 시, 위탁 보호 중인 학생이 필요한 특수 교육 서비스 및 1973년 연방 재활법 504항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위탁을 합니다.
6. 필요 시, 위탁 보호 중인 학생이 상담 및 건강 서비스, 보충 교육, 방과후 서비스 등의 적절한 학교 기반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7. 교장, 학장 및 출석 사무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Charter School 교직원이 위탁 청소년의 적절한 등록, 배치 및 전학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토콜 및 절차를 개발합니다.
8. 카운티 배치 기관, 사회 복지 서비스, 보호 관찰관, 소년 법정 직원 및 기타 적절한 기관과 협력하여 Charter School의 위탁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9. 위탁 청소년의 교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교장 또는 Charter School의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에서 식별된 지표에 기반한 피지명인 및 위원회에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WIC 319, 361 또는 726항, 대리 부모 또는 교육법 56055항하에 권한을 행사하는 위탁 부모에 따라 아동을 대표하도록 법원이 임명한 책임자인 교육적 권리를 보유한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주 및 연방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우선하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의 역할은 배정 옵션 및 출신 학교 결정에 관한 자문입니다.

학교 안정성 및 등록

Charter School은 위탁 청소년 및 그 ERH와 협력하여 각 위탁 청소년이 가장 제한이 적은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고,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업 자원, 서비스, 과외 활동 및 심화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대항 스포츠를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위탁 청소년의 교육 및 배치에 관한 모든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학업 성취 과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안정성 및 가장 제한이 적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합니다.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자녀 및 군인 가정 자녀는 그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면 출신 학교에 남은 권리가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출신 학교로서 Charter School에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아동 또는 군인 가정 자녀를 즉시 등록시킬 것입니다.

Charter School로 전학하려는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아동 또는 군인 가정 자녀는 학생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로 인해 미해결 비용, 벌금, 교과서, 기타 물품이나 돈, 또는 학교 공통 요건(예: 이전 학교에서 의료 기록 또는 학업 기록 제출)이 있다고 할지라도 즉시 등록됩니다(Charter School이 학생의 출신 학교가 아닐 경우 Charter School의 역량에 따라, 그리고 Charter School 현장 및 위원회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초기 지연이나 배치 또는 배치의 후속 변경 시, 위탁 청소년은 법원의 관할권 기간 동안 자신의

출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현재 이주 자녀 또는 군인 가정 자녀는 위에 설명된 현재 이주 자녀 또는 군인 가정 자녀의 정의를 충족하는 한 자신의 출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자녀 및 군인 가정 자녀는 법원의 관할 종료 후 또는 다음과 같이 현재 이주 자녀 또는 군인 가정 자녀로서의 아동의 상태가 만료된 후 자신의 출신 학교에 남아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의 경우, 학생의 신분이 변경된 학년도 동안 출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2.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출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자녀 또는 군인 가정 자녀가 학교 학년 사이를 이동할 경우, 해당 청소년은 같은 출석 지역의 출신 교육구에 계속 남아 교육구의 구축된 피더 패턴에 따라 동료들과 함께 입학할 허가를 받는 혜택을 제공받도록 허가되어야 합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이동하는 학생은 다른 교육구에서 입학할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는 위탁 청소년 및 위탁 청소년을 위한 ERH와의 협의 및 동의하에 위탁 청소년의 출신 학교에 다닐 권리를 포기하고 학생을 학생이 현재 등록 절차에 따라 해당 교육구의 거주자로서 다닐 자격이 있을 모든 교육구 학교 또는 Charter School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위탁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탁 청소년을 출신 학교에서 옮기도록 권고하기 전에,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는 위탁 청소년 및 위탁 청소년의 ERH에 권고의 근거와 추천이 위탁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탁 청소년의 출신 학교로 Charter School에 남아 있기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 청소년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Charter School에 남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쟁은 기존 Charter School 분쟁 해결 과정에 따라 해결됩니다.

교통편

Charter School은 지역 아동 복지 기관과 Charter School이 미합중국 법전 20편의 6312(c)(5)항에 따라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또는 미연방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위탁 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Charter School은 재량하에 위탁 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미합중국 법전 20편의 6312(c)(5)항에 따라, Charter School은 그것이 해당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 지역 아동 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위탁 청소년이 자신의 출신 학교에 계속 다닐 교통편 필요를 해결할 명확한 서면 절차를 개발 및 시행합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생의 IEP 팀은 학생의 상태에 관계없이 관련 서비스로 특수 교육 교통편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결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위탁 청소년의 성적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인해 Charter School에 결석하더라도 낮아질 수 없습니다.

- a.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기로 한 법원 또는 배치 기관의 결정. 이 경우 학생의 성적은 학생이 학교를 그만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b. 확인된 법원 출두 또는 관련 법원 명령 활동.

교과 과정 및 학점 양도

Charter School은 학생이 전체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고 학생에게 완료한 교과 과정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 학점을 발행해야 할지라도, 다른 공립학교², 소년 법정 학교, Charter School, 미국 외 국가의 학교, 또는 비공립, 무종파 학교나 기관에 다니는 동안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만족스럽게 완료한 교과 과정을 수락해야 합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전체 과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은 완료된 교과 과정에 대해 부분 학점을 받게 되며, Charter School이 학생의 ERH와 협의하여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시간 내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 한, 다른 학교에서 완료한 과정의 일부를 재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체의 특정 과정에서 위탁 및 이동 청소년에게 부분 학점이 부여될 때 언제든지, 학생은 해당되는 경우 학생이 전체 과정을 계속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동등한 과정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을 수강하거나 재수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졸업 요건의 적용 가능성

Charter School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학생은 반드시 Charter School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위원회에서 규정한 일체의 추가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언제든지 Charter School로 편입하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과 고등학교 3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Charter School에서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 말까지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교육법 51225.3항("추가 졸업 요건")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최소 졸업 요건을 초과하는 Charter School의 일체의 졸업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이 전학 날짜까지 취득한 학점 수 또는 학생의 학교 등록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면제에 대해 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11학년 또는 12학년 등록을 통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지 또는 4학년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에 따라 면제 자격이 있을 수 있는 학생이 Charter School로 전학한 날로부터 30 달력일 이내에 Charter School은 학생, ERH,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에게 면제 가능 여부 및 학생이 면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이 면제 이용 가능성에 대해 적시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은 해당 위탁 청소년이 면제에 적격할 경우 통지가 학생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 종료 후에 발생하더라도, 일단 통지를 받고 나면 추가 졸업 요건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 정책에 따라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이 면제되고 고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에 교육법 51225.3항에 명시된 주 전체의 교과 과정 요건을 완료하였으며 다른 상황에서는 Charter School에 계속 다닐 자격이 될 경우, Charter School은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에 졸업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Charter School이 추가 졸업 요건에 대한 면제를 승인할 경우, 위탁 및 이동 청소년과 그 ERH에 면제되는 일체의 요건이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² 군인 가정 자녀가 이수한 교과 과정상, "공립학교"에는 미국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포함됩니다.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전학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상황에서라면 Charter School에 계속 다닐 자격이 있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은 추가 졸업 요건 면제를 수락하거나 학생이 다른 상황에서라면 자격이 있을, 해당 과정이 주 전체 졸업 요건에 필요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등 교육 기관에 다니는 데 필요한 과정을 포함하여, 과정에 대한 등록 또는 완료 능력이 거부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추가 졸업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거나 이 정책에 따라 이전에 면제를 거부한 경우, Charter School은 해당 청소년이 면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이 면제 자격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학생을 면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청소년이 면제되는 경우, Charter School은 면제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이 항에 따라 추가 졸업 요건에서 면제되는 경우, 면제는 학생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이 종료된 후 또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는 동안 자격이 되는 상황이 종료된 후, 또는 학생이 Charter School이나 학교 교육구를 포함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Charter School은 추가 졸업 요건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위탁 및 이동 청소년에게 전학을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없으며, 위탁 및 이동 청소년 또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을 대리하는 모든 자는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에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전학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해당 학생의 고등학교 5학년도 이내에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다음에 따릅니다.

1. 만 19세 이상의 Charter School 학생의 지속적인 등록 및 흡족한 과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도 동안 학교에 남을 수 있는 학생의 옵션을 학생 및 학생의 ERH에 고지함.
2. 학생 및 학생의 ERH에게, 5학년 동안 학교에 남는 것이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지함.
3.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편입 기회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4. 학생의 동의를 있거나 학생이 만 18세 미만일 경우, ERH는 학생이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년 법정 청소년이 소년 법정 학교에 등록된 기간 동안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추가 교과 과정을 이수할 목적으로 졸업장 발급을 거부한 경우, Charter School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ERH가 요청할 경우 소년 법정 청소년의 Charter School 등록 및 추가 교과 과정 추구를 막지 않습니다.

과외 활동 자격

법원 명령 또는 아동 복지 직원의 결정에 따라 거주지가 변경된 위탁 양육 중인 학생은 학교 대항 스포츠 또는 기타 과외 활동 참여를 위한 모든 거주 요건을 즉시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의 면제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이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 및 안전("ASES")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체의 가족 부담 비용을 위탁 양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학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학생 기록

Charter School이 새로운 LEA에서 위탁 청소년의 교육 정보 및 기록에 대한 이동 요청 및/또는 학생 기록 요청을 받을 시, Charter School은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이러한 학생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의 완전한 교육 기록을 수집해야 하며, 여기에는 총 출석 시간, 취득한 전체 또는 부분 학점, 현재 수업 및 성적, 예방접종 및 기타 기록,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평가, IEP 및/또는 504 플랜을 비롯한 특수 교육 기록의 사본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 기록에 대한 모든 요청은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와 공유되며, 연락 담당자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Foster and Mobile Youth)의 특수 교육 기록 작성의 필요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의 교육 기록 및 학생 정보 정책에 따라, 제한된 상황 하에서 Charter School은 학생 기록 또는 해당 기록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 사법 시스템 내에서 위탁 가정 기관과 주 및 지방 당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요청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준수에 대한 고발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음에 대한 고발은 Charter School의 공통 고발 처리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통 고발 처리 정책 및 절차의 사본은 본교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https://www.brightstarschools.org>.